2026. 10.

인도 인도 저작권청, DABUS 사건에서 AI의 저작자 지위 부정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권 보호를 논할 때에는 적어도 세 가지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권법상 요구되는 창작성을 갖춘 저작물인지의 문제이다. 둘째, 인공지능 자체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셋째,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될 수 없다면, 시스템의 개발·설계·훈련·운영 또는 생성 조건의 설정에 관여한 인간 가운데 누가 법정 저작자로 평가되고, 저작권이 최초로 누구에게 귀속(원시귀속)되는지의 문제이다. 이들 문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판단의 대상과 법적 기준은 구별된다.

인도 저작권법(The Copyright Act, 1957)은 컴퓨터로 생성한 문학·연극·음악·미술저작물에 관하여 저작자를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the person who causes the work to be created)'으로 정한다[1]. 이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생성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더라도, 저작자 지위와 최초 저작권의 귀속을 법적으로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주체에게 연결하는 명문 규정이다. 인도 저작권법 제2조(d)호(vi)목[2]은 컴퓨터로 생성한 문학·연극·음악·미술저작물의 저작자를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the person who causes the work to be created)'으로 정한다. 이는 최종 산출물의 표현을 누가 직접 작성하였는지와 별도로, 컴퓨터 생성 과정을 구성하거나 결과물의 생성을 야기한 사람을 법정 저작자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비교법상 주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 저작권청 등록관 운나트 판디트(Unnat P. Pandit)는 2026년 8월 31일 DABUS 사건에서, AI 시스템인 DABUS를 저작자로 기재한 미술저작물 등록신청을 거절하였다[3]. 다만 등록관은 AI가 생성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결과물의 창작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해당 이미지가 등록절차에서의 제한적 심사 범위 내에서는 인도 저작권법 제13조상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DABUS를 설계·개발·구성·훈련하고 관련 입력자료를 제공·선별한 스티븐 탈러 박사가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을 전제로

1) Government of India, The Copyright Act, 1957, § 2(d)(vi).

2) 인도 저작권법 제2조(d)(vi): "in relation to any literary, dramatic, musical or artistic work which is computer-generated, the person who causes the work to be created"

3) Government of India, Copyright Office, In re Application of Dr. Stephen L. Thaler for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Diary No. 9356/2022-CO/A, Order dated 31 August 2026. 2.는 이 결정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저작자 기재 정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이 글은 인도 저작권청의 DABUS 결정이 창작성, 저작자 지위 및 최초 저작권 귀속을 어떻게 구별하여 판단하였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컴퓨터로 생성한 저작물(computer-generated work)의 법정 저작자를 정하는 인도 저작권법의 특수한 구조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생성물 보호 논의와 향후 입법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주요내용

1) 사건의 경위와 쟁점

스티븐 L. 탈러 박사는 2022년 5월 3일 인도 저작권청에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제목의 미술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사건번호는 Diary No. 9356/2022-CO/A이며, 신청서에는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가 저작자로 기재되었다. 신청서상 해당 작품은 2016년 미국에서 최초 공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DABUS가 여러 인공신경망 모듈로 구성된 AI 시스템이며, 자신이 그 시스템을 구상·설계·개발·구성·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탈러 박사는 시각자료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언어자료로 선별한 동의어 사전 항목과 영어 문장을 제공하고, 시각·언어 자료 사이의 연관성을 형성하기 위한 간단한 설명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최종 이미지는 실시간 인간 개입이나 텍스트 프롬프트 없이 DABUS의 내부 연산과정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이 신청인의 입장이었다.

저작권청은 신청서가 DABUS를 저작자로 기재하였으나, 인도 저작권법 제2조(d)호(vi)목이 요구하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자연인 또는 법인격을 가진 주체를 저작자로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저작권청은 2023년 7월 31일 보완요구서를 발송하여, 법적으로 저작자로 기재될 수 있는 사람을 특정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서의 저작자 기재를 정정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진행 없이 절차가 지연되자, 탈러 박사는 신속한 심리를 구하는 소를 델리 고등법원에 제기하였다. 델리 고등법원은 2026년 4월 9일 담당판사 투샤르 라오 게델라(Justice Tushar Rao Gedela)의 명령으로, 저작권청이 예정된 4월 27일자 심리일로부터 8주 이내에 이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리도록 명하였다[4]. 저작권청은 이 명령에 따라 2026년 4월 29일, 5월 25일, 6월 24일 세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하고 8월 31일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심리 과정에서 저작권청은 다음 네 가지 쟁점을 설정하였다.

4) Delhi High Court, Stephen Thaler v. Union of India, Order dated 9 April 2026(Tushar Rao Gedela, J.). 2022년부터 별다른 진행 없이 계속되던 절차의 지연에 대하여 탈러 박사가 신속한 심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델리 고등법원이 저작권청에 기한을 정하여 결정을 명한 것이다.

쟁점	검토 내용
저작물의 창작성	문제된 이미지가 인도 저작권법 제13조상 독창적인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법정 저작자	컴퓨터로 생성한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최초 저작권 귀속	탈러 박사의 최초 저작권 귀속 주장이 저작자 기재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체계와 부합하는지
DABUS의 등록상 표시	DABUS를 저작자가 아니라 생성에 사용된 기술적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저작권청은 이 사건의 판단이 DABUS를 저작자로 기재할 수 있는지 및 신청서에 기재된 저작자·권리자 사항이 인도 저작권법에 부합하는지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결정은 모든 AI 보조 창작이나 AI 생성물에 관하여 포괄적인 저작권 보호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등록신청과 신청인이 제출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등록결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창작성과 저작자 지위의 구별

인도 저작권법 제13조 제1항(a)호는 독창적인 문학·연극·음악·미술저작물에 저작권이 성립한다고 정한다. 다만 '창작성'의 정의를 직접 두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청은 인도 대법원의 Eastern Book Company v. D.B. Modak 판결[5]을 참조하여, 저작권 보호에는 특허법상의 신규성·진보성과 같은 높은 수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기계적이거나 사소한 작업을 넘는 최소한의 창의성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등록관은 문제된 이미지가 시각적 형상, 색채, 명암 변화, 공간관계 및 구성요소의 배열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록상 해당 이미지가 특정 선행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단순한 기계적 명령의 필연적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관은 등록절차에서 이루어진 제한적 심사 범위에서, 해당 작품이 독립적으로 생성되었고 사소하지 않은 표현적 성격을 가지므로 제13조상 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이 결정의 핵심은 등록관이 창작성과 저작자 지위를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 저작권청은 DABUS가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결과물이 독창적인 표현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즉 AI 시스템이 법적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만으로 AI 생성 결과가 창작성을 상실하거나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판단은 인간의 관여가 전혀 없는 모든 AI 생성 결과가 보호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등록관은 탈러 박사가 시스템의 설계·개발·구성·훈련, 시각·언어 입력자료의 제공과 선별, 생성 환경과 조건의 마련에 관여하였다는 신청인의 설명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결정은 인간이 최종 표현을 직접·동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컴퓨터 생성 결과의 창작성을 곧바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5) Eastern Book Company v. D.B. Modak, (2008) 1 SCC 1.

3) DABUS의 저작자 지위 부정

인도 저작권법 제2조(d)호(vi)목은 컴퓨터 생성 문학·연극·음악·미술저작물의 저작자를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으로 정한다. 저작권청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격을 가진 주체를 포함할 수는 있지만, DABUS와 같은 AI 시스템은 자연인도 법인격을 가진 주체도 아니므로 해당 규정상 저작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등록관은 저작자 지위가 단순히 사실상 생성과정에 기여하였거나 결과물을 산출한 기술적 원인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저작자는 저작권을 보유하고 행사·양도·허락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작인격권의 주체가 되고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된 주체여야 한다. 인도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저작권 보호기간, 최초 저작권 귀속 및 권리 이전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법적 주체성을 전제로 한다. DABUS는 현행 인도법상 그러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저작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저작권청의 결론이다.

신청인은 DABUS를 저작자로 기재하는 것이 DABUS에게 독립된 법인격이나 권리행사 능력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생성된 사실적 경위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저작권청은 기술적 생성 경위의 설명과 법적 저작자 지위의 부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DABUS가 생성에 사용된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신청 관련 자료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정은, DABUS에게 저작자 지위나 저작권 귀속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창작을 야기한 사람'과 인간 귀속

저작권청은 신청인이 밝힌 사실관계를 전제로, 탈러 박사가 DABUS의 설계·개발·구성·훈련을 담당하고, 시각·언어 입력자료를 제공·선별하며, 시스템이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탈러 박사가 제2조(d)호(vi)목에서 말하는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에 해당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등록관은 2026년 6월 24일 심리에서 신청인에게 탈러 박사를 저작자로 기재하도록 신청서의 저작자 사항을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DABUS를 저작자로 계속 기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탈러 박사를 저작자로 기재하되 DABUS를 생성 시스템으로 표시해 달라는 대안적 요청도 기존 저작자 기재를 무조건적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저작권청은 DABUS를 저작자로 기재한 신청서가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신청을 거절하였다.

이 결정은 컴퓨터로 생성한 저작물의 법정 저작자성이 반드시 최종 표현의 모든 요소를 직접 선택·배열한 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시스템의 설계·구성·훈련, 입력자료의 제공·선별, 생성 과정의 개시 및 생성 환경의 조성 등 인간의 선행적 관여가 결합된 경우, 그러한 사람이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어떠한 수준의 인간 관여가 있어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이 결정이 일반적·정량적 기준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DABUS 결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AI 생성 결과를 둘러싼 세 가지 문제, 즉 ① 결과물의 창작성, ② 저작자 지위, ③ 최초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데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등록관은 문제된 이미지가 최소한의 창작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면서도, DABUS는 법인격을 가진 주체가 아니므로 저작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인도 저작권법상 컴퓨터로 생성한 저작물의 법정 저작자는 AI가 아니라 '저작물의 창작을 야기한 사람'이며, 그 사람이 저작자로 인정되는 경우 최초 저작권의 귀속도 원칙적으로 그에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대상 작품인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는 탈러 박사가 미국에서도 동일하게 등록을 시도하였던 바로 그 작품이다. 미국에서는 저작권청이 인간 저작자성이라는 문턱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였고, 연방지방법원(2023년)과 컬럼비아특별구 연방항소법원(2025년 3월)이 이러한 거부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이에 대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No. 25-449, cert. denied). 이에 따라 D.C. Circuit의 판결은 이 사건에서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상고허가신청의 기각은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의 법리를 본안에서 승인하거나 별도의 판단을 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6]. 인도 저작권청의 이 결정은 AI를 법적 저작자 또는 권리주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컴퓨터 생성결과의 창작성 판단과 인간에게 귀속되는 법정 저작자성 판단을 분리하였다는 점에서 미국의 접근과 대비된다. 미국에서는 DABUS를 유일한 저작자로 기재하고 탈러 박사를 소유자로만 기재한 등록신청이 인간 저작자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해당 이미지가 독립적으로 최소한의 창작성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별도의 적극적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인도 저작권청은 DABUS의 법적 저작자 지위는 부정하면서도, 문제된 이미지가 제13조상 최소한의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별도의 쟁점으로 검토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같은 작품에 대한 이러한 차이는, 인간 저작자성 원칙을 유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창작성 판단과 저작자 지위 판단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확인되지 않는 순수 AI로 생성한 결과물은 현행법상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또한 우리 법에는 인도 저작권법 제2조(d)호(vi)목과 같이 컴퓨터 생성저작물의 법정 저작자를 '창작을 야기한 사람'으로 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인도 결정의 법리를 현행 한국 저작권법에

6) 탈러 박사는 2025년 10월 9일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2026년 3월 2일 이를 기각하였다(No. 25-449, cert. denied). 이에 따라 D.C. Circuit의 판결은 이 사건에서 유지되었다.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입법정책과 해석론의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AI 생성 결과의 창작성, 법정 저작자성 및 최초 저작권 귀속을 하나의 문제로 혼합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를 저작자나 권리주체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시스템의 설계·개발·구성·훈련, 입력자료의 제공·선별, 생성조건의 설정 및 결과물에 대한 선택·편집 등 인간의 관여를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순한 시스템 소유 또는 투자만으로 저작자 지위와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표현 형성에 관한 실질적 통제나 창작적 선택을 요구할 것인지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컴퓨터로 생성한 저작물에 관한 별도 귀속규칙이나 제한된 보호제도를 검토할 경우, 창작자 보상, 공공영역의 확보, AI 산업의 혁신, 데이터 이용과 경쟁질서, 일반 이용자의 창작 자유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DABUS 결정이 시스템 개발자 또는 소유자에게 모든 AI 생성결과의 저작권을 자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탈러 박사가 DABUS의 설계·개발·구성·훈련에 관여하고, 입력자료를 제공·선별하며, 생성이 이루어질 조건을 마련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그럼에도 탈러 박사는 DABUS를 저작자로 유지하였고, 법정 저작자 기재를 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결정은 AI 생성물 일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인도 저작권법상 컴퓨터 생성저작물의 창작성 및 인간 귀속 가능성을 검토한 등록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Department for Promotion of Industry and Internal Trade, Copyright Office, Office of the Registrar of Copyrights, In re Application of Dr. Stephen L. Thaler for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Diary No. 9356/2022-CO/A, Order dated 31 August 2026
- Government of India, The Copyright Act, 1957, § 2(d)(vi), § 13, §§ 17–19, § 45; Copyright Rules, 2013, Rule 70.
- Delhi High Court, Stephen Thaler v. Union of India, Order dated 9 April 2026(Tushar Rao Gedela, J.).
- Eastern Book Company v. D.B. Modak, (2008) 1 SCC 1(인도 대법원).
- Thaler v. Perlmutter, No. 23-5233 (D.C. Cir. Mar. 18, 2025); Thaler v. Perlmutter, No. 25-449, cert. denied (U.S. Mar. 2, 2026).